

★ 발의안 71에 찬성하는 주장 ★

발의안 71은 유권자의 투표 법안 승인 후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는 우리의 선거 법에 대한 단순한 상식입니다. 이것은 양 당의 지지를 받아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 수정책입니다.

발의안 71은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 법안, 국민투표, 또는 헌법 수정안이 주 국무장관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두 개표하고 투표 성명을 기록한 후 발효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승인 한 발의 법안, 국민투표, 또는 헌법 수정안은, 본 법안 자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발의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California 인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가 2014 년에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한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에 관한 국민투표인 발의안 67 (2016)입니다. California 인들은 이 금지 법이 유효하도록 발의안 67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실제 금지령이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발의안 71은 법안의 이행 일자를 주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인증한 후로 변경함으로써 미래의 선거에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주 전체 발의안들에 대해 명확한 효력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발의안 71은 주 전체 선거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것입니다. 2016 년에는 모든 유권자의 53퍼센트 (California 인 약 9백20만명)가 부재자 우편 투표에 등록하였습니다. 편리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유권자가 부재자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추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권자 참여를 긍정적으로 장려하지만, 투표 용지 집계에 걸리는 시간을 길어지게 하였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각 유권자'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부재자 우편 투표 봉투에 있는 각 유권자'의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일, 또는 최대 3일 후에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도착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매우 당락을 가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선거일 집계 이후에도 바뀔 수 있음을 역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발의안, 국민투표, 그리고 헌법 수정안의 이행 일자를 주 국무장관의 선거 결과 인증 후로 변경하는 것은 투표용지 법안의 진실되고 정확한 이행을 보장할 것입니다. 발의안 71에 대한 “찬성”에 투표하십시오 .

KEVIN MULLIN, 의장 대행
California State Assembly
RALPH E. SHAFFER, 명예교수
Cal Poly Pomona
HELEN HUTCHISON, 의장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 발의안 71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주 헌법의 현행 언어는 유권자들이 승인한 투표용지 법안이 (법안이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거 후 다음날”에 발효되도록 합니다.

법안은 (순서대로) 투표 결과가 결정되고 인증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효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후 다음날”이라는 구절은 오직 통과한 법안만이 이전 날짜로 소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지자들이 인용한 사례에서는, 유권자의' 2016 년 입법부'의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법을 지지한 국민투표는 선거 결과가 인증되었을 때 효력이 발휘되었고, 이전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전(소급) 날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 년 6월 5일 투표에서 연쇄 아동 성추행범은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제의한 발의안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발의안 71이 통과된다면 (위의 가정에서) 이 새로운 종신형 법률은 최종 투표 인증 전까지는 효력을 발행할 수 없을 것이고, 유권자가 바꾸기에 합당하다고 여긴 이 형량 선고 법에 의해, 아동 성추행범은 더 많은 희생자를 공격할 시간(현재 최대 38 일까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71은 일부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고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GARY WESLEY

★ 발의안 71에 반대하는 주장 ★

이것은 주 전체 투표용지 법안 대부분에 관한 California 헌법의 2 개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 입법부의 제의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일부 투표용지 법안은 주 입법부가 제의했으며; 다른 것들은 유권자 청원 절차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 입법부가 절차의 변경을 제안할 때, 그 제안은 주의 깊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청원 절차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절차는 입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유권자가 “referendum”을 통해 중지 및 제거를 원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을 때 사용됩니다.

이 법안에는 주 입법부가 장래에 자체 제정에 따라 주 국무장관이 법안에 관한 선거 결과를 공표하는 (현재 38 일) 기간을 지연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차를 위태롭게 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관한 입법부의 요약은 (소위 말하는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17—“ACA 17”) 다음과 같습니다:

California 헌법은 유권자 대부분이 승인한 발의 법안, 국민 투표, 또는 헌법 개정이나 수정안은 법안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법은 주 국무장관이 모든 주 전체

법안의 결과를 정리하고, 선거 후 최대 38일까지 정리한 결과의 투표 성명을 준비, 인증, 그리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반수의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 법안, 국민 투표, 또는 헌법 개정이 주 국무장관이 해당 법안이 투표가 끝난 선거에 대한 투표 성명을 제출하고 5 일 후에 발효되도록 규정하며, 이 법안은 발의 법안, 국민 투표, 또는 헌법 개정이나 수정이 효력 발생 일 이후에 시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이 규정들에 대한 비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은 맞으나, 몇몇 사람들은 입법부가 (오래전 1970 년에 채택된) 현존하는 헌법상의 언어로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에 의해 제정된 어떠한 법률도 투표 결과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현재 쓰여진 대로 (제정된 변경사항이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이 언어는 선거 후 날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변화를 만듭니다. 이 법안이 제안하는 수정안은 주 유권자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있어 이와 같이 이른 (그리고 소급하는) 효력 발생 일을 제거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지자들이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더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GARY WESLEY

★ 발의안 71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California 유권자들 앞에 발의안 71로서 존재하는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17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로 입법부 양원을 통과했습니다.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양당의 방식에서 입법자들은 발의안 71이 작고 기술적이지만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71은 더 많은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현안을 밝힙니다.

현행 법률은 투표 발의안이 선거 다음날에 효력이 발휘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71은 단순히 현행 법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결과가 선거 후 몇일 후에도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과 일관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California 주 상원 분석에서는 명시합니다: “발의안 71은 발의안 또는 국민투표의 제정을 주 국무장관이 투표 성명을 공개한 후 5일까지 늦출것이다. 투표가 인증된 후에 제정을 늦춤으로써,

이 법안은 투표 용지 법안의 진실되고 올바른 이행의 실현을 보장한다.”

California 법률 하에서는 헌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유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자체적으로 유권자가 제정한 발의안의 이행을 늦출 수 없습니다. 1970 년에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듯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의안 71은 현행 법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고 간단한 해결 조치입니다. 발의안 71에 대한 찬성에 투표하십시오 .

KEVIN MULLIN, 의장 대행

California State Assembly, District 22

MARC BERMAN, 위원장, Assembly Committee on Elections and Redistricting

California State Assembly, District 24

HENRY STERN, 위원장, Senate Committee on Election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California State Senate, District 27